

삼표시멘트 ESG위원회 규정

제정 2022. 11. 10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삼표시멘트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회 내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환경(Environment)·사회(Social)·지배구조(Governance)와 관련된 회사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,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(이하 "ESG"라 한다)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, 회사의 ESG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, 그 활동을 관리·감독·평가·검토한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4 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5 조(위원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 또는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10 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(사무국)

- ①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사무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- ② 사무국의 조직장은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.
- ③ 사무국은 필요 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, 회사의 법무, 재무, 인사 부서 등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 관련 정보 및 자료, 협업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8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10 조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1 조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대해 결의한다.
 1. ESG 관련 주요 정책, 계획 등의 수립, 관리에 관한 사항
 2. ESG 관련 제반 규정 제정 및 개정
 3. 사회공헌사업 보고
 4. 중요 ESG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의사결정필요 사항
 5. 기타 ESG 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정기/수시 진행사항

2. ESG 관련 이슈사항 발생 시 관련 사항

3.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ESG 관련 사항

③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 12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의사록)

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